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건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37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취지	4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관련 해외 사례	5
3. 제정안 주요 조문 검토	7
IV. 종합의견	14
※ 참고자료	15
1.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관련 국내법 현황	15
2. 북한 관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1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건의의원 등 46인
2. 제안일자 : 2024년 7월 9일
3. 회부일자 : 2024년 7월 10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단일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소관 부처가 안보리 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개별 법률을 찾아 이에 근거하여 행정입법을 하는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유 또한 부족한 상황임.

이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행조치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새로운 안보리결의가 채택되거나 기존 안보리결의가 변경될 경우 외교부장관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경과 및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동 제정안은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이하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우리나라의 안보리결의 이행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단일 법률(절차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안보리결의 채택시, 외교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회의¹⁾를 통해 결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여 각 관계부처가 기존 소관 법률을 토대로 행정입법을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법령을 제·개정해 왔음.

이 경우 ① 기존 법령이 안보리결의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입법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② 우리 정부가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동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임.

1) 외교부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과장급 협의 및 실무협의 등으로 구성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관련 해외 사례

미국은 안보리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수권법률인 「유엔참여법(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1945)」을 제정하고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을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행정명령과 국무부·재무부 등 미 행정부 규정을 혼용하여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고 있음. 아울러 미국은 대외 제재와 관련된 일반적 법률²⁾과 특정 국가 및 이슈와 관련된 법률³⁾을 함께 활용하고 있음.

EU의 경우 EU 이사회 결정(decision) 및 규정(regulation)을 통해 안보리결의가 이행되고 있음. EU 이사회 결정은 무기금수, 입국금지 등 회원국 정부만을 대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 만장일치제로 채택되는 반면, EU이사회 규정은 무역, 금융, 자산동결 등 경제 제재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가중다수결제⁴⁾를 통해 추가적으로 채택됨.

EU 이사회 결정 및 규정은 EU 내 시민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제재 이행 여부를 확인함. EU법 및 EU 이사회 규칙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독립적으로 제재이행조치를 취하고 있음.

2) 「국가비상사태법(NEA)」,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이민·국적법」, 「방첩법」 등

3) 「이란 제재·책임·투자철회 통합법」, 「이란 위협 감소 및 시리아 인권법」,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 「적성국 제재법」 등

4) 한 나라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나 경제력,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하여 가결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려면 총 투표수의 과반수(50% 초과)를 필요로 함

일본의 경우 안보리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권 법률은 없으며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하고 있음. 다만, 기존 법률로 안보리결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법⁵⁾을 제정하거나 각의 결정⁶⁾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음.

5) 「북한인권법」, 「화물검사특별조치법」,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

6)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와 유사한 일본의 내각 의사 결정 절차로서, 안보리 결의 이행 또는 독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해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각의결정이 필요함. 각의결정 절차 후 소관 부처의 시행령이 고시되어 안보리 결의의 이행이 이루어짐.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안보리결의 1695호(2006.07.15.) 및 1718호(2006.10.14.) 등에 따른 각의결정을 한 바가 있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한 북한 관련 대응 조치(2016.2월·12월 및 2017.7월·8월·12월, 자산동결 단체 추가 지정 등),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에 기초한 특정선박 입항금지조치(2016.2월, 모든 북한 선박 및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일본 입항 금지 / 2016.12월, 북한기항 일본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3. 제정안 주요 조문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하 “안보리결의” 라 한다)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채택한 권고·조치 등의 결정문을 말한다.

제정안 제1조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법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안보리결의⁷⁾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채택한 권고·조치 등의 결정문을 의미함.

「국제연합헌장」 제7장⁸⁾에서는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국제사회의 평

7) 「국제연합헌장」 제27조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3. 그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8) 「국제연합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40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 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이행하여야 할 헌장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당사국들이 주요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제연합은 강제조치에 따라 이를 실행시킬 수 있음.

국제연합의 강제조치는 규정상 권고·잠정조치·경제제재·군사행동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강제조치는 안보리에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며, 통과될 경우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됨.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현황 >

구분		이사국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비상임이사국	2023-24년 임기	일본, 스위스, 몰타, 에콰도르, 모잠비크
	2024-25년 임기	한국, 슬로베니아, 가이아나, 알제리, 시에라리온

※ 자료: 외교부

한편, 제정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라 경우 안보리결의는 안보리가 행한 모든 결정을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보리결의에는 회원국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권고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안보리결의의 범위를 제재 조치를 포함한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한정할 필요성과 이를 명확히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규정하기 위해 적용범위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국가의 권익 확보 (안 제4조)

제4조(국가의 권익 확보) 안보리결의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정안 제4조는 안보리결의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조약⁹⁾이나 WTO 협정¹⁰⁾에서 유사한 규정을 둔 사례가 있음.

동 조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적용배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는 것은 회원국의 의무사항¹¹⁾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

외교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동 조항이 안보리결의의 이행 거부나 회피 등의 의도가 아닌 확인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의 경우라도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임.

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6조(경제적 권익의 보장) 통상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10)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경제주권의 보장)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어느 조항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11) 「국제연합헌장」

제25조 국제연합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보리결의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5조는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관한 다른 법률과 제정안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이 법에 안보리결의 이행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안보리결의 이행에 관한 개별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특정 국가에 대한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단일 법률은 없는 상황이고, 안보리결의가 채택되는 경우 각 관계부처가 기존 소관 법률¹²⁾을 토대로 행정입법을 추진하고 필요시 법령을 제·개정해왔음.

라.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 (안 제6조)

제6조(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 ①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보리결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보리결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외 안보리결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12) 안보리결의 이행 관련 기존 국내법은 【참고자료 1】 참조.

- ④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행정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6조는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외교부 소속으로 설치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1) 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

제정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은 위원회를 외교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인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안보리결의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외교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회의¹³⁾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각 관계부처별로 조치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외교부장관임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 외교부는 관계부처 국장급, 과장급 및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안보리결의 이행에 관련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2024년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총 24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국장급 주재 회의는 13회, 과장급 주재 회의는 3회, 실무급 회의는 8회 개최됨.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정안 제6조제2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국내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심의 필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음.

안보리결의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국내 법령의 검토를 통해 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안보리결의 이행 과정에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 안보리결의의 공표 (안 제7조)

제7조(안보리결의의 공표) 외교부장관은 새로운 안보리결의가 채택되거나 기존 안보리결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7조는 외교부장관에게 안보리결의가 새롭게 채택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알리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과 같이 안보리결의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안보리결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바. 위원회 의결사항의 반영 등 (안 제8조)

제8조(위원회 의결사항의 반영 등) 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에 반영한 내용의 이행경과 및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8조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 효과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외교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이를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

이에 따라 위원회 의결 사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임.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행경과 및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그간 안보리결의 이행과 관련된 새로운 행정입법 사항 등이 소관 법률별로 산재되어 우리 정부의 조치를 통일성있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행조치가 법인 또는 개인의 이동 및 재산에 대한 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결의의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IV. 종합의견

제정안과 같이 안보리결의 이행에 관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경우, 안보리결의를 이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정부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내법 체계를 통해서도 안보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바, 동 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행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268

【참고자료 1】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국내법 현황

□ (제재 대상 개인·단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출입국 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안보리 결의상 지정된 개인 및 단체 자산동결, 거래금지, 입국금지 대상으로 추가 반영

- * 「공중법」 제4조 2항(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 「국제평화 영수 허가지침」 제2조 8항(적용범위): 안보리 1718위원회가 지명한 자 등

□ (금수품 거래 제한)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금수품의 대북 이전, 수출입, 조달 금지/ 「관세법」 등에 따라 북한산 의심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 및 통관 심사 강화

- * 「남교법」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물품(남북한간 직접 이동하는 물품)의 반출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 필요

□ (북한 노동자 고용 제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신규 고용 제한

- * 「남교법」 제9조(남북한 방문):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을 받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 소지
- ** 「남교법」 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 남북한 주민이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

□ (해상 차단) 「해양 경비법」, 「선박입출항법」, 「관세법」 등에 따라 금지활동 연루 의심 선박 활동에 대한 감시·추적 지속 실시, 출항허가 대상선박 지정 조치 등

- *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1항: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해상검문 실시 가능 / 2호: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들
- ** 「선박입출항법」 제4조(출입신고): 출입하려는 선박(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동 법 시행령 3조))은 해양수산부장관에 신고 의무
- ***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조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시 화물의 검색·봉쇄 가능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관련 담당 기관 및 법령 >

기관명	담당부서	관련법령 및 고시(▲법률, -고시)
외교부	국제법규과	▲ 영해 및 접속수역법
기재부	외환제도과 관세제도과	▲ 외국환 거래법 -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 관세법
금융위	금융정보 분석원 기획행정실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4항) ▲ 은행법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4항)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산자부	융합기술과 수출입과 전략물자와 관리과 철강화학과	▲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 대외무역법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대외무역법 제5조2의4호) - 전략물자 관리원(대외무역법 제29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제13, 14조) - 반출·반입 승인 대상 품목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사치품 리스트 지정)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 금지품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대북 전략 물자의 반출·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 남북 협력 기금법
법무부	공안 기획과 외국인 정책과 형사법제과 국제형사과	▲ 국가보안법 ▲ 출입국 관리법 ▲ 형법114조(테러지원자 처벌)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5조)
과기부		▲ 원자력 안전법 - 원자력 수출입 통제 관리 시스템
국방부	전력정책과 합참공중작전과	▲ 방위사업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관명	담당부서	관련법령 및 고시(▲법률, -고시)
국토부	항공정책과 해외 건설과	▲ 항공안전법(100조) ▲ 해외건설 촉진법
해경청	경비과	▲ 해양 경비법
해수부	항만운영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관세청	통관기획과	-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원자력 안전 위원회	방재환경과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자료: 외교부

【참고자료 2】 북한 관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제재대상 국 가	제재결의 (채택일자)	제 재 내 용
북한 (1718 위원회)	결의 1718 (06.10.14)	- o 무기 및 사치품 금수, 화물검색 도입, 제재대상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 o 제재위 설치
	결의 1874 (09.6.12)	- o 무기금수 범위 확대 및 선박·화물 검색 강화 - o 전문가패널 설치(제재위 지원)
	결의 2087 (13.1.22)	- o 제재조치 강화(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 확대, 금융제재 확대) - o Trigger 조항(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
	결의 2094 (13.3.7)	- o △금융 △화물 검색 △선박 및 항공기 차단 분야 등에서 새로운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catch-all 등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 강화 - o 제재 대상(개인 3명 및 단체 2개) 및 WMD 관련 금수품목 추가 지정 / 사치품 예시 목록(보석류, 요트, 고급 자동차 등) 마련 - o Trigger 조항 강화(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 예정)
	결의 2270 (16.3.2)	- o 기존 제재 조치 강화(금융 제재 강화, 북한에 대한 전면적 무기 금수,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의무화) - o 신규 제재 조치 도입(제재 회피·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정부대표 추방, 제재 대상자 소유·운영 및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 회원국 입항금지, 석탄 수출금지 및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 o 제재 대상 확대(단체 12개, 개인 16명 추가 지정)
	결의 2321 (16.11.30)	- o WMD 및 재래식 무기 금수 강화(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금지 등) - o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금지 광물 추가(은, 동, 아연, 니켈), 조형물(statue), 신규 헬리콥터, 선박 수출 금지 - o 해운·항공 운송 제재 강화 및 차단 조치 강화(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등, 북한행발 여행용 수하물 검색 의무 명시 등) - o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 및 90일내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 - o 제재 대상 확대(개인 11명, 단체 10개) - o 회원국내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회원국내 북한 공관·공관원 개설 은행 계좌(1개) 제한, 북한 공관의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제재대상 국 가	제재결의 (채택일자)	제 재 내 용
	결의 2356 (17.6.2)	o 제재 대상(개인 14명 및 단체 4개) 추가 지정
	결의 2371 (17.8.5)	o 북한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북한 납 및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o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o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추진 및 확대 금지 o 제재 대상 확대(개인 9명, 단체 4개)
	결의 2375 (17.9.11)	o 대북 유류 공급 제한(정유제품 연간 200만 배럴 상한 설정, 원유 현 수준 동결),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o 불법행위 의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촉구(기국 동의 하), 대북 선박간 이전(ship to ship transfer) 금지 o 북한과의 합작사업 및 상업적 협력체 설립·유지·운영 금지 o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o 제재 대상(개인 1명, 단체 3개) 추가 지정
	결의 2397 (17.12.22)	o 대북 유류 공급 추가 제한(정유제품 연간 50만 배럴, 원유 연간 400만 배럴 상한 설정), 북한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 o 불법행위 연루 의심선박에 대한 나포·검색·동결(억류) 조치 의무화(항구 입항시) 및 권한 부여(영해 내) o 24개월 내 북한 해외노동자 전원 송환 o 제재 대상(개인 16명, 단체 1개) 추가 지정
	결의 2407 (18.3.21)	o 전문가 패널 임무 2019.4.24까지 연장
	결의 2464 (19.4.10)	o 전문가 패널 임무 2020.4.24까지 연장
	결의 2515 (20.3.30)	o 전문가 패널 임무 2021.4.30까지 연장
	결의 2569 (21.3.26)	o 전문가 패널 임무 2022.4.30까지 연장
	결의 2627 (22.3.25)	o 전문가 패널 임무 2023.4.30까지 연장
	결의 2680 (23.3.23)	o 전문가 패널 임무 2024.4.30까지 연장

※ 자료: 외교부